

## 오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

제정 1999년 7월 5일 조례 제 551호

개정 2003년 12월 11일 조례 제 766호

개정 2008년 9월 29일 조례 제 993호

(체명개정)

일부개정 2017년 4월 18일 조례 제1578호

(체명개정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수도법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오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 9. 29, 2017. 4. 18>

**제2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<개정 2017. 4. 18>

1.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
2. 오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<개정 2008. 9. 29>
3.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<개정 2008. 9. 29>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(性)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. <개정 2017. 4. 18>

② 위원장은 환경사업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. <개정 2017. 4. 18>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 <개정 2017. 4. 18>

1. 시 관내 대학교수, 환경단체 임원 중 수질전문가
2. 시민 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
3. 상수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<개정 2008. 9. 29>
4. 상수도 관련 공무원

**제4조(임기 및 직무)**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 등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또는 재임하는 기간으

## 오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

로 한다. <개정 2008. 9. 29>

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7. 4. 18>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7. 4. 18>

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5조(위원의 해촉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4. 18>

1.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
2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(6월이상)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3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4.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**제6조(회의 및 의사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. <개정 2017. 4. 18>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7조(의견의 청취)**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**제8조(간사등)**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, 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.

②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.

**제9조(수당등)**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, 시료채취에 참여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오산시위원회실비면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4. 18>

**제10조(정기검사 및 자문)** ① 위원장은 반기별 1회이상 수돗물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0조의2(공표)**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

하나에 따라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.

1. 시 홈페이지
2. 동 주민센터 비치 및 게시
3. 시 시보

[본조신설 2017. 4. 18]

**제11조(운영세칙)**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 <개정 2017. 4. 18>

#### **부칙**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삭제 <2003. 12. 11>

#### **부칙** <2003. 12. 11 규칙 제76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**부칙** <2008. 9. 29 규칙 제993호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행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오산시수돗물평가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.

③(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오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오산시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본다.

#### **부칙** <2017. 4. 18 조례 제157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